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9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『평생교육법』(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공포·시행)개정에 따라
인용조문을 개정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
따라
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제21조로 함(안 제1조)
- 용어 등의 개정
 - "～의 규정에 의거" → "에 따라"
 - "기타" → "그 밖에"
 - "범위 안에서" → "범위에서"

5. 검토의견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『평생교육법』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1조에서 "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"을 "평생교육법 제21조"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,
-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 임 :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.